

제299회 시의회 임시회
기획경제위원회
2021. 03. 03.(수)

I·SEOUL·U
너와 나의 서울

세계 최고의 소기업·소상공인 종합지원 플랫폼 기관

정 관 변 경 보 고

정관 변경 보고

I. 변경이유

- 「서울시 출자·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」 일부 개정 (2020.12.31.)
에 따른 서울시의회 결산서 제출 기한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
 -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을 완료하고 10일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제출 기한 변경

「서울특별시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」
제22조의2(예산 및 결산의 제출 등) ② 출자·출연기관은 매 회계연도가
끝난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을 완료하고 10일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
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- 市 「기본재산 목록 정관기재 시정요구」 (공기업담당관-2019.11.06.)
에 따라 시정요구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
 -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조에 따라
정관에 기본재산(출연금) 목록 기재 의무화

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
제8조(정관) ① 출자·출연 기관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
여야 한다. 다만, 출자·출연 기관의 형태와 특성이나 업무 내용상 해당
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.
4. 자본금 또는 출연금

II. 주요내용

1 결산 제출 기한 변경 [제30조 제4항]

- 서울시의회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 제출 기한 변경 (제30조 제4항의 2)
 - 2개월 이내에 결산을 완료하고 10일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제출

2 기본재산 목록 기재 [별지]

- 재단 기본재산 목록 '별지' 개정
 - 회계법인 감사 및 재단 이사회 의결을 거친 '2020년 결산재무제표' 상 기본재산 목록 기재

※ '재무상태표' 주석13(기본재산)

- 재단의 기본재산은 재단 설립시의 서울특별시 출연금과 재단 설립 후 서울특별시 및 국내 각 금융기관의 출연금으로 구성되어 있음

<별지> 기본재산 목록

(단위 : 천원)

구분	출연기관	금액(2020.12.31.기준)
설립시기본자산	서울특별시	50,000,000
출연금	서울특별시	414,480,466
	대한민국정부	128,303,968
	자치구	27,800,000
	금융회사 등	651,605,452
	소 계	1,222,189,886
합 계		1,272,189,886

III. 시행일 :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승인이 있는 날

【붙임】 정관 변경 전·후 대비표 1부. 끝.

【붙임】

정관 변경 전 · 후 대비표

현 행	변 경(안)
<p>정 관</p> <p>제1장 총 칙 제1조~제6조 -- (기재 생략) --</p> <p>제2장 임 원 제7조~제14조 -- (기재 생략) --</p> <p>제3장 이사회 제15조~제21조 -- (기재 생략) --</p> <p>제4장 업 무 제22조~제27조의3 -- (기재 생략) --</p> <p>제5장 회 계 제28조~제29조 -- (기재 생략) --</p> <p>제30조(예산과 결산) ①~③ -- (기재 생략) -- ④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결산보고서, 대차대조표, 손익계산서와 기본재산계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당해연도가 종료된 날부터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1. 시장에는 2개월 이내2.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는 3개월 이내	<p>정 관</p> <p>(현행과 같음)</p> <p>제30조(예산과 결산) ①~③ -- (기재 생략) -- ④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결산보고서, 대차대조표, 손익계산서와 기본재산계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당해연도가 종료된 날부터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1. 시장에는 2개월 이내2.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는 <u>2개월 이내에 결산을 완료하고 10일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제출</u>

현 행	변 경(안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p>제31조~제35조 -- (기재 생략) --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제6장 해 산</p> <p>제36조~제37조 -- (기재 생략) --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 칙(1~19) (기재 생략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<신 설></u></p> <p><별지> <u>기본재산 목록</u> <신설 2020.05.26.>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head> <tr> <th style="width: 15%;">구 분</th> <th style="width: 35%;">출연기관</th> <th style="width: 50%;">금액(2019.12.31.기준)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설립시 기본자산</td> <td>서울특별시</td> <td style="text-align: right;">50,000,000</td> </tr> <tr> <td rowspan="5">출연금</td> <td>서울특별시</td> <td style="text-align: right;">333,515,466</td> </tr> <tr> <td>대한민국정부</td> <td style="text-align: right;">118,135,008</td> </tr> <tr> <td>자치구</td> <td style="text-align: right;">13,150,000</td> </tr> <tr> <td>금융회사 등</td> <td style="text-align: right;">527,157,705</td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소 계</td> <td style="text-align: right;">991,958,179</td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합 계</td> <td></td> <td style="text-align: right;">1,041,958,179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구 분	출연기관	금액(2019.12.31.기준)	설립시 기본자산	서울특별시	50,000,000	출연금	서울특별시	333,515,466	대한민국정부	118,135,008	자치구	13,150,000	금융회사 등	527,157,705	소 계	991,958,179	합 계		1,041,958,179	<div style="text-align: center;"> <p>(현행과 같음)</p> <p>부 칙(20)</p> <p>이 정관은 중소기업부장관의 승인이 있는 날부터 시행한다.</p> </div> <p><별지> <u>기본재산 목록</u> <개정 2021.00.00.>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head> <tr> <th style="width: 15%;">구 분</th> <th style="width: 35%;">출연기관</th> <th style="width: 50%;">금액(2020.12.31.기준)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설립시 기본자산</td> <td>서울특별시</td> <td style="text-align: right;">50,000,000</td> </tr> <tr> <td rowspan="5">출연금</td> <td>서울특별시</td> <td style="text-align: right;">414,480,466</td> </tr> <tr> <td>대한민국정부</td> <td style="text-align: right;">128,303,968</td> </tr> <tr> <td>자치구</td> <td style="text-align: right;">27,800,000</td> </tr> <tr> <td>금융회사 등</td> <td style="text-align: right;">651,605,452</td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소 계</td> <td style="text-align: right;">1,222,189,886</td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합 계</td> <td></td> <td style="text-align: right;">1,272,189,886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구 분	출연기관	금액(2020.12.31.기준)	설립시 기본자산	서울특별시	50,000,000	출연금	서울특별시	414,480,466	대한민국정부	128,303,968	자치구	27,800,000	금융회사 등	651,605,452	소 계	1,222,189,886	합 계		1,272,189,886
구 분	출연기관	금액(2019.12.31.기준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설립시 기본자산	서울특별시	50,000,00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출연금	서울특별시	333,515,466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대한민국정부	118,135,008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자치구	13,150,00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금융회사 등	527,157,705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소 계	991,958,179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합 계		1,041,958,179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구 분	출연기관	금액(2020.12.31.기준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설립시 기본자산	서울특별시	50,000,00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출연금	서울특별시	414,480,466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대한민국정부	128,303,968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자치구	27,800,00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금융회사 등	651,605,452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소 계	1,222,189,886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합 계		1,272,189,886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